

포장상자 파손에 기인한 손해책임은 메이커에 있다

원고 : Hill (트럭 운전자)

피고 : James Crowe (Cases), Ltd (포장상자 제조자)

트럭 운전수가 그의 트럭에 적재됐던 한 화물 포장상자 위에 서서 작업하다가 상자가 찌그러져 상해를 입고, 그 상자 메이커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법원은 포장상자가 제조되었고, 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이해하에 포장상자 메이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한 트럭 운전수가 그의 트럭에 수개의 목제상자를 싣고 서아프리카 라고스를 경유하여 부두로 운송하던 도중에 입은 손해에 대한 상해보상을 피고 James Crowe사에 청구한 본건은 특이한 소송사건이었다. 이 같은 손해사건은 그러한 상자를 조작할 때에는 그 적재와 장육을 포함하여 어떤 경우나 일어날 수 있으며, 만약 본건과 비슷한 원인으로 하역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그 배상의 목표는 선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건은 선주와 선박 운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화물운송인과 특히 포장창고 업자와 포장용 상자 메이커들에게 특별한 관심사가 된다.

피고 James Crowe사는 해외로 적송되는 화물의 포장업을 경영했으며 한편으로 포장용의 목제상자도 제조하였다. 이 회사는 원고인 운전자 힐씨가 그의 트럭에 적재하였던 목제상자 중 적어도 어느 한 개를 제조하였던 것이다. 힐씨는 런던 동단 실버타운에 소재하는 Newbold Shipping Service사의 한 창고로 그의 트럭을 몰고 갔으

며, 그곳에서 수 개의 포장된 목제상자와 TV 수상기가 든 카튼 상자를 트럭에 적재해야 하였다. 창고 종업원이 운전하는 지게차가 목제상자들을 힐씨의 차로 끌어들여 실었으며, 힐씨는 그것을 받아 적당한 자리에 옮겨 놓았다. 얼마 안되어 트럭 적재함은 목제상자로 덮였으며 다음에도 역시 지게차에 의해 TV 수상기 카튼상자 위에 서서 첫 TV 카튼상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 힐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한 목제상자의 가장자리에서 있는데 상자의 일부 판자가 찌그러지면서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한다. 그는 상자를 날림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또 믿을만한 한 증인을 통하여 상자에 못을 충분히 많이 사용치 않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James Crowe사가 운송 중에 상자와 접할 사람들에게 예견할 수 있는 재해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만들 의무가 있으며, 또 그같이 상자와 접할 것 같은 사람들 중에는 화물 적재 중에 상자 위에서 있다가 상자가 찌그러지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 있다

고 개진하였다. 결국, Crowe사는 그 같은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또 그러한 과실은 동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본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James Crowe사의 책임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즉, (1) 운전수는 그가 서 있던 포장상자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넘어졌는가? (2) 만약 그렇다면, 그 상자는 조잡하게 만들어졌는가? (3) 만약 그렇다면, 그 제조자는 만약 상자가 조잡하게 만들어진다면 운전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본건의 운전수가 당한 것과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그러한 조제행위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유의를 해야 했는가. (4) 만약 그렇다면, 운전수가 서 있었던 상자는 James Crowe사에 의해 제조되었는가? 사고당시의 환경, 상자의 상태, 상자 제조의 기술기준 등에 관해 수명의 증인이 소환되었고 또 상당수의 증거가 제시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증인과 증거를 심리한 후에 상이한 4가지 문제점들에 관해 운전수에게 유리한 제정을 서슴지 않고 내렸다. 법원은 사고가 단지 운전수가 상자 위에서 서 있는 동안에 발생했고, 그 원인은 상자가 찌그러졌기 때문이고, 또 찌그러진 것은 못질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건은 그 책임문제를 확립하기 위해 영국 고등법원의 MacKenna 판사 앞으로 회부되었다. 동법원은 만약 본건이 Donoghue 대 Stevenson 건에서 확정된 규칙의 적용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그 책임은 확정된다고 말하였다. 동법원은 하역인이 조작하는 물품을 포장한 회사에 대해 그 하역인이 공소원에 제소하였던 보고되지 않은 한 사건과 본건이 흡사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사건에서 물품은 무거웠으며 그 포장물은 와이어(wire)로 묶여 있었다. 하역작업에서 와이어를 쓰는 것은 한 관습이었다. 그런데 그 포장물의 하나는 와이어를 잘 묶지 못했기 때문에 하역인이 조작하는 동안에 풀어졌으며, 그래서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해를 입었다. 그 사건에서 공소원은 포장물

에 와이어를 묶은 포장업자가 만약 와이어를 부적당하게 묶는다면 그것을 다루는 하역인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본건에서 법원은 그 사건에서의 포장업자의 책임과 본건에서의 Crowe사의 책임 사이에 원칙적으로 어떠한 차이점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피고 Crowe사는 그러한 책임을 거부하면서 Daniels 사 White 건의 판례를 들고 나왔다. 그 사건에서 원고는 술집에서 한 레몬수 한 병을 샀었는데 그 병에는 석탄산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술집에 레몬수를 판매한 레몬수 메이커를 제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패소하였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메이커가 그 공장에서 질서있는 작업체계를 갖추고 있고, 충분한 생산감독을 했으므로, 메이커는 구매자에 대한 그 의무를 다했다고 논하였다. 그러나 본건에서 MacKenna 판사는 그 판례가 본건의 배상청구를 각하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메이커의 과실책임은 그가 불충분한 작업체계를 갖고 있다든가, 혹은 감독이 부적당하다는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메이커는 또한 그의 종업원이 작업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책임을 대신 질 수도 있으며 또 만약 원고의 손해가 그러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과실의 결과였다면, 그 책임은 확정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동법원은 피고인 James Crowe사에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Fairplay International 25th May 1978. p.27)

